

출장보고서

I. 출장 개요

1. 출장건명: 전통주 국내외 산업현황 및 세계화 가능성 조사
2. 출장목적: 일본의 주류행정체계 및 규제완화 동향 등 파악
(관련부서 합동출장)
3. 출장지역: 일본
4. 출장기간: 2009. 6. 16(화) ~ 6. 19(금), 3박 4일
5. 출 장 자

부서명(기관명)	직 급	성 명
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	선임연구위원	이동필
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	규제개혁팀 과장	윤인대
농림수산식품부	식품산업진흥팀 서기관	김종실, 김선법
농촌진흥청	발효양조과장	김태영

* 통역: 윤재언박사(동경농업대학국제식료정보학부) (03)3565-2218

6. 출장일정

일 자	주요 활동내역	비 고
6월 16일	서울 출발, 일본 (히로시마) 도착	
6월 17일	청주회사 가쓰모루방문 주류총합연구소 사이조세무서	◦ 공장견학 ◦ 일본의 주류제도 문답 ◦ 주류총합연구소기능 ◦ 일본 주류규제/관리실태
6월 18일	청주회사 야에끼방문 야마다니시키 체험관 청주회사 월계관방문	◦ 공장견학 ◦ 일본주류산업 실태 ◦ 일본주 원료용 야마다니시키쌀 체험관 견학 ◦ 공장견학
6월 19일	주류총합연구소(동경사무소) * 선진화위원회로 조기귀국	◦ 일본의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실태 파악

7.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

소속기관	직 급	성 명	연락처
청주회사 가쓰모루	부사장	小林信也	(082)424-1124 (misono@kamotsuru.co.jp)
주류총합연구소	연구부문장	三上重明	(082)420-0823 (mikami@nrib.go.jp)
사이조세무서	세무서장	桑原義和	(082) 422-2191 (http://www.nta.go.jp)
청주회사 야에끼	전무취재역	佐伯秀郎	(079)268-8070 (saeki-hd@yaegaki.co.jp)
야마다니시끼체험관	대표	富永修裕	(06) 6202-3951 (sstar@inetsbb.jp)
청주회사 월계관	양조부장	水津哲義	(075)623-2140 (suizu@gekkeikan.co.jp)

II. 주요 출장 결과

(1) 일본 주류제도의 개요

- 일본의 주류 관련제도는 주세법(1953.3.1시행)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(1962.3.31 시행), 그리고 주세보전 및 주류조합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음
- 우리나라 주세법체계는 일본을 모체로 하기 때문에 법제정의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기본 골격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
 - 다만 일본의 경우 [주세보전및주류조합등에관한법률]이란 별도의 법률로 우리 [주세법] 제2절에서 다루고 있는 주류업단체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고 있음
- 일본 주세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적 발전을 도모한데 비해 우리는 여전히 징세편의를 위한 강한 규제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

(2) 일본의 주세행정체계

- 일본의 주세행정은 재무성(구 대장성) 주계국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외청인 국세청과 산하 11개 지방국세국이 면허와 주세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 - 국세청 감정관실 및 11개 지방국세국의 과세부에 감정관 68명을 배치하여 ① 간접국세 과세물건의 분석 및 감정, 기타 간접국세의 부과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, ②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의 발달, 개선 및 조정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것, ③ 양조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주류의 품질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있음
- 한편 1904년 주류의 품질향상을 위해 대정성 산하에 양조시험소를 설립, 본격적인 양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02년 행정개혁 차원에서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기술연구소를 운영 중임
 - 2009년 현재 주류종합연구소는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과와 연구기획지재부, 품질안전성연구부, 양조기술기초연구부, 양조기술응용연구부, 양조기술개발연구부, 정보기술지원부 등 1과 6부문에 52(그중 연구직 38)명의 직원이 양조부문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, 주류의 감정분석품질평가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음

(3) 일본 및 우리나라 주세법의 주요한 차이점

□ 주류의 종류 및 제조방법

- 한국은 주류를 13개 품목으로 구분하는데 비해 일본은 주류를 4종류(발포성주류, 양조주류, 증류주류, 혼성주류로 구분, 22만엔 14만엔, 20만엔, 22만엔의 종량세 부과), 17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다양화
- 우리는 주류의 품목별로 규격기준(주세법 제5조)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기타 용어의 정의(일본주세법 제2조)에서 가볍게 다루고 있어서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가 완화
- 다만 일본주세법 시행령에서는 주류의 종류별 사용가능한 원료를 제시하고 있다든지, 지리적표시 및 유지원료의 표시 등 자율적으로 상표무의 특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서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

<표 1> 주류분류별 품목, 연간 최저생산량 및 주세

주류 종류	주류의 품목	최저생산량(KL)	주세(KL당)
발포성주류	맥주	60	22만엔(단, 발포주중 맥아의 중량이 25-50%는 17만8천125엔, 25%미만은 13만4천250엔)
	발포주	6	
	기타 발포성주류	-	
양조주류	청주	60	14만엔(단 청주 12만엔, 과실주 8만엔)
	과실주	6	
	기타양조주	6	
증류주류	연속식증류소주	60	20만엔(알코올분 21도 이상은 2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만엔 가산), 단 위스키, 브랜디 및 스피리츠이면서 알코올분이 37도 미만인 것은 37만엔
	단식증류소주	10	
	위스키	6	
	브랜디	6	
	원료용알코올	6	
	스피릿츠	6	
혼성주류	합성청주	60	22만엔(알코올분 21도 이상은 2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만엔 가산), 단 합성청주 10만엔, 미림 및 잡주는 2만엔, 감미과실주 및 리큐르 12만엔(알코올분이 30도 이상은 12만엔에 초과하는 1도마다 1만엔 가산, 분말주 39만엔
	미림	10	
	감미과실주	6	
	리큐르	6	
	분말주	6	
	잡주	6	

* 기타 발포성주류는 맥주 및 발포주 이외의 주류중 알코올분이 10도미만으로 발포성을 갖는 것으로 품목에서 제외

□ 주류의 제조에 대한 규제

- 주류제조면허시 시설요건이 없이 <표 1>의 품목별 연간 최저생산량)이상은 면허를 받도록 규정(일본주세법 제7조)
 - 지역진흥을 위한 구조개혁특구에서 농원민박이나 레스토랑을 운영할 경우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탁주(도부로구)를 생산, 제조장내에서 판매하거나 자기영업장에서 소비할 경우 최저생산량기준을 적용배제(2007년 현재 28개의 탁주특구 지정, 운영)
 - 이밖에 청주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에서 단식증류소주나 미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, 연속식증류소주 또는 단식증류소주의 제조면허자가 그 제조장에서 미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, 과실주 또는 감미과실주 제조면허 자가 그 제조장에서 브랜디를 제조할 경우 등은 최저

생산량기준 적용배제(일본주세법 제7조 ②항,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)

〈표 2〉 일본 주세법 개정(2006.5.1) 전후의 주류의 품목별 정의

구주세법		신주세법	정의 및 개정내용
종류	품목	품목	
청 주		청 주	- 알코올분이 22도 이상의 것을 제외 - 쌀, 쌀국, 물 및 청주박 이외의 물품중량의 합계가 쌀(쌀국포함)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 -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 “보리, 조, 옥수수, 고량, 수수, 피 혹은 전분 또는 이들 국”을 제외
합성청주		합성청주	“알코올분이 16도 미만, 엑스분이 5도이상으로 산도가 일정 이상의 것” 이외를 제외 -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 “보리, 조, 옥수수, 고량, 수수, 피 혹은 전분 또는 이들 국”을 제외
소 주	소주갑류	연 속 식 증류소주	명칭변경
	소주을류	단 식 증류소주	- 명칭변경 - 원료마다의 규정을 명칭화
미 립		미 립	알코올분이 15도미만, 엑스분이 40도이상으로 원료포도당 등의 중량이 일정이하의 것“ 이외를 제외
맥 주		맥 주	알코올분이 20도이상의 것을 제외
과실주류	과실주	과실주	- 과실 또는 과실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에 대해서는 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 - 주류의 원료로 된 과실에 함유하는 당류의 중량을 초과하여 당류를 가하는 것을 제외 - 주류중량의 100분의 10 초과하여 당류를 가한 것 제외
	감미과실주	감미과실주	과실주로 되지 않는 것과 과실주로 된 주류의 일부를 추가
위스키류	위스키	위스키	개정내용 없음
	브랜드	브랜드	상동
스피릿츠류	스피릿츠	스피릿츠	상동
	원료용알콜	원료용알콜	상동
리큐르		리큐르	명칭을 변경
잡 주	발포주	발포주	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
	분말주	분말주	
	기타잡주	기타양조주	- 개정전 주세법 규정에 의한 잡주(기타잡주)의 일부주류에 대해 품목을 신설 “알코올분이 20도미만, 엑스분 2도이상의 것” 이외의 것을 제외 - 알코올 이외의 주류를 원료의 일부로 한 것을 제외 - 알코올을 원료의 일부로 한 것으로 알코올분 15도 이상의 것 또는 알코올의 중량이 물 이외의 원료의 100분의 30이상의 것을 제외
		잡주	이상의 주류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(신설)

□ 주류의 유통에 대한 규제완화

- 주류판매업 면허시 판매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시설기준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류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업면허도 허용하여 비교적 쉽게 주류판매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
 - 특히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면허를 취득한 제조장에서 하는 주류판매업 및 술집, 음식점, 기타 주류를 음용하는 자기영업장 영업에 대해 별도의 판매면허를 면제(일본 주세법 제9조)
- 거래상대방 제한 없음(제조자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슈퍼나 소매상과 거래 가능, 도매상과 도매상간의 거래 가능)
- OEM방식의 생산 허용(시설이 없는 업체나 판매회사가 타사제품 판매)
- 도매상 면허기준 완화(3년 전 2km이내 도매상허가금지조건 폐지)
-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판매 허용
 - 통신판매주류소매업면허는 판매하고자 하는 주류의 범위, 카달로그 등의 발행연월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주류의 품목별 과세출몰량이 모두 3천kl미만인 제조자가 제조, 판매하는 주류 또는 수입주류에 부여(일본주세통달, 제9조 11호 ④ 통신판매주류소매업면허의 수급조정요건)

〈표 3〉 일본주류에 대한 의무표시 내용

주류제조업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	주류판매업자가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. 주류판매업자가 재병입하여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
-	주소
성명 또는 명칭	성명 또는 명칭
제조장 소재지	거래선 또는 재병입장소 소재지
용기용량(분말주는 중량)	용기용량(분말주는 중량)
주류의 품목	주류의 품목
주류의 알코올분(분말주는 제외)	주류의 알코올분(분말주는 제외)
세율적용구분(발포성 및 잡주에 한함)	세율적용구분(발포성 및 잡주에 한함)
발포성을 갖는 뜻 및 세율적용구분 (기타발포성주류에 한함)	발포성을 갖는 뜻 및 세율적용구분 (기타 발포성주류에 한함)

* 표시사항은 상기주류의 포장에 대해서도 적용

□ 전통주 및 소규모생산자에 대한 배려

- 특산품 소주제조면허(수급조정 필요에 의해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주원료로 연간 100kl미만까지 단순증류소주 제조면허, 청주제조 후 주박으로 증류식소주제조 등 예외 인정)
 - 특산품 중 쌀, 보리, 고구마 또는 메밀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제조장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이 신청하고자 하는 날이 속한 연도앞의 3개년 평균과세출고수량과 평균소매수량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작은 경우에 제조면허 허용(일본주세통달, 제9조 11호 4 단식증류소주)
- 지자체의 관련서비스업(가츠누마의 와인박물관, 식당, 숙박업소) 참여
- 막걸리 특구제도(구조개혁특구로 지정하여 최저생산량 기준적용 배제)
- 영세업체에 대한 조세감면(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해 연간 1300kl이하 소규모 일본주업체가 생산하는 주류 중 200kl까지 세금 25% 감면)

□ 일본주류의 지리적표시 방법 및 대상

- 조합법 제86조의 6(주류의 표시기준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에 관한 표시기준(일본 국세청고시, 1994.12.28)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본에서 보호하는 포도주, 증류주 또는 청주의 산지 중 국세청장관이 지정하는 산지의 지정 및 일본이 보호하는 단식증류소주의 지리적표시대상은 <표 4>와 같은데 당해 산지이외의 지역을 산지로 하는 단식증류소주 등에는 이러한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
 - 장관지정산지는 ① 특별한 품질특성과 사회적 평가를 얻는 포도주, 증류주 또는 청주를 생산하며, 그 명칭이 당해 포도주 등의 특별한 품질특성과 사회적 평가를 명시하는 포도주 등의 생산지역일 것, ② 지리적표시에관한표시기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정산지이외의 지역을 산지로 하는 포도주 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해 지정산지는 일본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리적 표시를 특정하게 하는 것일 것, ③ 일본 이외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청주산지를 장관지정 산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에서 당해 청주산지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어 있을 것 등을 전제로 함(일본주세통달 제8편제86조의 6의 ③)

〈표 4〉 일본에서 등록하여 보호하는 지리적표시 주류

산 지	지리적표시 대상의 규격기준
이키 (壹岐)	쌀누룩 및 나가사키현 이키시의 지하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1차 술덧에 보리 및 이키의 지하수를 첨가하여 더 발효시킨 2차 술덧을 나가사키현 이키시에서 단식증류기로 증류하고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“이키”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
구마 (球磨)	쌀누룩 및 구마강의 복류수인 구마모토현 구마군 또는 구마모도현 히토요시(人吉)시의 지하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1차 술덧에 쌀 및 구마의 지하수를 첨가하여 더 발효시킨 2차 술덧을 구마모도현 구마군 또는 구마모도현 히토요시에서 단식증류기로 증류하고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“구마”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
류큐 (琉球)	쌀누룩(흑누룩균을 사용한 것에 한정)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1차 술덧을 오키나와현에서 단식증류기로 증류하고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“류큐”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
사쓰마 (薩摩)	쌀누룩 또는 가고시마현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누룩 및 가고시마현산 고구마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에 가고시마현 내(아마미(奄美)시 및 오시마(大島)군 제외)에서 단식증류기로 증류하고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“사쓰마”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
하쿠산 (白山)	흰쌀, 쌀누룩 및 이시가와현 하쿠산시의 지하수 또는 이와 양조알콜을 원료로 하여 이시가와현 하무산시에서 발효시킨 후, 여과하여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“하쿠산”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. 다만 흰쌀, 쌀누룩에 사용하는 원료쌀은 농산물검사법(1951년 법률 제133호)에서 정하는 양조용 현미 1등 이상의 등급이 매겨진 것으로 정미비율 70% 이하인 것, 누룩쌀 사용비율 20% 이상인 것에 한함. 밀술은 “생원”, “산페원”, 또는 “속양원”으로 하고, 술덧은 “증양”, “액화제조”는 제외함

□ 일본청주의 등급관리 및 표시사항

- 청주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정해져 있는 점, 그 중에 반드시 쌀을 사용해야 하는 점, 그리고 여과하는 공정이 반드시 들어가는 점이 특징이며, 주세법 제 3조 제 3호에서 규정하고 있음
 - 1943년부터 국세청감정관실에서 청주의 등급심사를 해왔으나 1993년 이를 폐지하고 개별업체별로 특, 선 등 임의표시
- 일본청주 중에서 품질이 좋은 특정명청주는 원료와 제조방법을 기준으로 크게 ① 吟釀酒(긴쥬슈): 精米비율 60%이하의 백미와 쌀누룩 및 물 또는 이들과 양조 알코올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 청주로서 고유의 향미 및 색택이 양호한 것, ② 純米酒(준마이슈): 백미, 술누룩 및 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청주로서 향미 및 색택이 양호한 것, ③ 本釀造酒(혼쥬조슈): 精米비율 70%이하의 백미와 쌀누룩, 양조 알코올 및 물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 청주로서 향미 및 색택이 양호한 것의 3종류로 분류

- 청주의 제조법 품질표시기준(1989년 11월 22일 국세청고시 제 8 호)에 의 해 쌀재료, 제조방법 등을 기준으로 <표 5>와 같은 8종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표시내용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음(일본주세통달 제8 편제86조의 6의 ②)

〈표 5〉 일본청주의 종류별 품질표시기준

특정명칭	사용원료	정미비율	누룩쌀 사용비율	향미 등 요건
吟釀酒 (긴쵸쵸)	쌀, 쌀누룩, 양조알코올	60%이하	15%이상	음양 만들기 고유의 향미, 선택 양호
大吟釀酒 (다이긴쵸쵸)	쌀, 쌀누룩, 양조알코올	50%이하	15%이상	음양 만들기 고유의 향미, 선택이 특히 양호
純米酒(쥬마이쵸)	쌀, 쌀누룩	-	15%이상	향미, 선택이 양호
純米吟釀酒 (쥬마이긴쵸쵸)	쌀, 쌀누룩	60%이하	15%이상	음양 만들기 고유의 향미, 선택 양호
純米大吟釀酒 (쥬마이다이긴쵸쵸)	쌀, 쌀누룩	50%이하	15%이상	음양 만들기 고유의 향미, 선택이 특히 양호
特別純米酒 (토쿠베츠쥬마이쵸)	쌀, 쌀누룩	60%이하 또는 특별한 제조방법(설명표시)	15%이상	향미, 선택이 특히 양호
本釀造酒 (혼쵸쵸)	쌀, 쌀누룩, 양조알코올	70%이하	15%이상	향미, 선택 양호
特別本釀造酒 (토쿠베츠혼쵸쵸)	쌀, 쌀누룩, 양조알코올	60%이하 또는 특별한 제조방법(설명표시)	15%이상	향미, 선택이 특히 양호

□ 일본주류에서 유기농 및 유전자조작 등의 표시

-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류에서 유기농표 시기준(2000.12.26, 국세청고시 제7호)에 따라 주류제조시 유기농표시기 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
 - 유기농 또는 오가닉이란 표시는 유기농농산물가공주류의 제조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류에 대해 표시할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 하지는 않 음
- 주류에서 유전자조작에 관한 표시는 유전자조작에 관한 표시와 관련한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제7조제1항 및 생선식품 품질표시기준 제7조제1 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(2000년 농림수산성고시 제517호)의 가공식품 규정을 준용(일본주세통달 제8편제86조의 6의 ① ⑤)

(3) 현지간담회 개최

- 일시: 2009. 6. 18
- 장소: 일본 동경 시내 식당
- 참석자: 국경위 윤인대과장외 5명
- 주요 토의내용: 일본사례를 기초로 한 우리술산업 육성방안

① 주류제조업 면허요건 완화

- 우리나라의 경우 주종별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있어서 진입장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
- 대부분의 국가는 시설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최소생산량기준만 적용(일본주세법 제7조)
 - 구조개선특구에서 운영하는 막걸리제조면허는 최소생산량기준(6kl) 예외 인정
- 일본처럼 주종별 최저생산량기준으로 전환, 또는 시설기준 대폭 완화

② 주류의 유통구조 개선

-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거래는 상대방을 정해 원칙적으로 제조자는 도매상에게, 도매상은 소매상에게,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거래하도록 규정
 - 민속주와 농민주, 탁·약주 등 특정주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제조자가 소매상 및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 허용하고 특정주류도매업제도 운용
- 일본의 경우 도매상과 소매상 면허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제조자가 도매상은 물론 소매상에게 직접 판매, OEM판매도 가능
- 대형소매상과 같은 새로운 유통업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도매상간 및 도매상의 소매상에 대한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강구

③ 주류통신(인터넷포함)판매 허용

-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음주노출 회피 등을 이유로 통신판매를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민속주와 농민주는 1회 20병까지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허용

- 일본에서는 별도의 통신판매면허제도 운용
 - 연간 3000kl미만 생산업체는(?) 표시의무를 전제로 통신판매허용
- 대부분 영세업체로 판로가 어려운 전통주(민속주와 농민주 등)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허용방안 강구

④ 주류의 규격 및 원료사용제한 완화

-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별 규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다양한 주류의 생산을 저해
- 일본에서는 주류의 제조방법은 특별한 규제가 없으나 실제 사용한 원료나 첨가물에 대해서는 이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판단
- 한약재나 기능성농식품 등 탁·약주의 첨가물료의 범위확대로 다양한 주류생산 허용
 -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부재료의 범위는 식품위생법(식품공전)에 규정되어 있으나 술의 경우 사용방법이나 양이 다른 만큼 허용범위 확대 필요(예를 들어 옷술, 음양곽술 등 옛날부터 민간에서 만들어 먹던 술에 사용한 원부재료 허용)

⑤ 제품별 판매허가제도 완화

-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판매업은 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(주세법 제8조)
- 일본에서는 판매면허시 종류별 시설기준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(면허신청시 판매장에서 주로 판매할 품목 기입),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주류를 자기영업장에서 판매할 때는 별도의 판매면허 없이 가능하도록 허용(일본주세법 제9조)
-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장에서 허가받은 주류를 판매할 때는 별도의 판매면허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완화

⑥ 전통주에 대한 과세표준 완화

- 과세표준에 용기, 포장비용을 포함(주세법 제21조)하고 있어서 세부담이

크고, 수입주류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

-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류업체의 세부담이 크고, 특히 전통주와 같은 영세업체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욱 큼
- 현실적으로 주세의 경우 각국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며, 특히 전통주의 경우 전체적으로 세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용기, 포장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⑦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판매제한 완화

- 소규모 주류제조업체의 경우 자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홍보 및 판매 촉진의 여력이 적고 독자적인 유통망을 갖추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
- 특히 농촌체험마을이나 농가민박업소 등에서 자가생산한 주류를 반주형태로 판매할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갖추어 제조 및 판매허가를 받아야 함
- 소규모 전통주업체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상대 지정 규제를 완화하고, 특정주류 도매면허제도를 운영하는가하면 부분적으로 통신판매제도 허용
-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업체가 별도의 판매면허 없이 자기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의 판매허용, OEM 및 도매업소간 판매허용, 우편판매 확대 등 유통규제 완화가 홍보 및 판매촉진에 대한지원과 함께 이루어지면 소규모 주류업체의 판로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임
- 정부지정 농촌체험마을 등을 대상으로 특구지정을 확대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반주용 주류의 생산 및 판매의 자율화방안 강구

⑧ 특정주류도매업 취급주류 범위 확대

- 특정주류도매업의 경우 전통주 및 탁·약주 등 주로 영세한 업체가 생산한,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주류만 취급하기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취급품목에 과실주 등을 추가하는 것은 경영

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

- 현행 법령상 과실주의 포함여부 재확인. 단, 수입와인 등을 특정주류도매업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당초 제도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려움

⑨ 농민주를 지역특산주개념으로 전환

-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자기가 생산한 원료농산물을 50%이상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제조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칭하여 농민주라 부르고 있음
- 추천요건상 농민주는 50%를 자기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상 자국산 원료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(농민주)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WTO 내국인 대우규정을 위배할 가능성도 있음
- 농민주의 명칭을 지역특산주로 바꾸고,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 원료 농산물을 원부재료로 사용하도록 전환
- 유럽에서도 지역특산주에 대해서는 주세감면 등 차별적 지원을 인정(유럽연합명령(Directive CEE N°92/83))

⑩ 전통주제조면허관리 강화

- 전통주의 경우 출고량이나 납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, 현실적으로 농식품부가 전통주의 제조허가 추천(추천을 하면 대부분 국세청에서 허가발급)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및 유통, 과세에 있어서 전통주를 포함한 특정주류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어서 전통주에 대한 제조면허관리권을 이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임
- 다만 전통주만 별도의 관리체계로 분리할 경우 주류행정을 이원화하는 데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은 있음
- 주류제조면허를 국세청이 관리·운용하되 제조면허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완화하고, 두 부처간 명백한 업무분담(주세관리는 국세청, 산업육성은 농식품부) 및 협조체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

⑪ 주류업단체 설립허가 독점권 완화

- 우리나라는 주류제조 또는 판매 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보전의 협력과 상호복리 증진을 위해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(주세법 제 20조)
-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점규정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별도의 단체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

(4) 출장중 수집한 자료

- ① 일본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
- ② 특산품소주 제조면허신청지침, 2006.5(국세국, 세무서)
- ③ 일반주류소매업면허신청지침, 2008년 9월(세무서)
- ④ 구조개혁특구에 있어서 제조면허지침 : 특정농업자에 의한 탁주제조, 2008.7 (세무서)
- ⑤ 일본주 상품라벨용어사전, 2008.2, 주류종합연구소편
- ⑥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 개요, 2009.4
- ⑦ 특집 청주의 연구, 2005.8, 주류종합연구소
- ⑧ 2008년 청주시장 상위 업체의 출하물량, 2009.2, 주류식품통계월보
- ⑨ 히로시마 국세국 및 세무서 기구, 2009